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에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설립·운영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담당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검역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검역업무 정원 118명(19명, 34명, 53명, 12명) 중 53명(19명, 34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3.6.11.)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예정(’24.1.18.)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질병관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24. ~ 12.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6명(5급 47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을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5명(5급 46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으로 하고, 제35조제3항 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8명(5급 19명, 6급 14명, 연구관 5명)”을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7명(5급 19명, 6급 13명, 연구관 5명)”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전라북도 군산시”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하고 “강원도 동해시”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81”을 “479”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7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70”을 “46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20”를 각각 “918”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910”를 “908”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53명
2) 검역 업무(국립검역소)	12명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8조 관련)

1. 제3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1

2. 제3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1
7급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질병관리청의 정원 4명(5급 2명, 7급 1명, 연구사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6명(5급 47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75명(5급 46명, ----- ----- ----- ----- -----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인수공통감염병 범부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38명(5급 19명, 6급 14명, 연구관 5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8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③ 의약품, 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해당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⑤ (생략)	----- ----- ----- ----- 37명(5급 19명, 6급 13명, ----- ----- ----- ----- ----- 제38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 ④·⑤ (현행과 같음)
---	---

신·구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 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국립검역소의 명칭 및 위치(제29조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위 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립부산검역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립인천검역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국립평택검역소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국립군산검역소	전라북도 군산시	<u>전북특별자치도</u> 군산시
국립울산검역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국립포항검역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국립동해검역소	<u>강원도</u> 동해시	<u>강원특별자치도</u> 동해시
국립목포검역소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국립여수검역소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립마산검역소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국립김해공항검역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립제주검역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구 정원대비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81</u>	· <u>479</u>	△2
일반직 계	· <u>480</u>	· <u>478</u>	△2
3급 또는 4급 이하	· <u>470</u>	· <u>468</u>	△2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20	918	△2
일반직 계	920	918	△2
3급 또는 4급 이하	910	908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